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09609 판결 [계약보증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0. 10. 30 선고 2019나2036392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18 선고 2018가합509609 판결

전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용, 정경인, 기형규, 이준형, 하선헤, 이경호

피고B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 홍순혁, 최준홍

변론 종결2019. 6. 20.

판결 선고2019. 7. 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19. 7. 1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424,623,6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0. 3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에게 D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이라 한다)을 계약금액 12,819,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도급하는 내용의 건설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같은 '원고'를, 을은 'C'를 의미한다).

1. 발주자: E

원도급공사명: D 건설공사-F

2. 하도급공사명: D 건설공사 설계용역

3. 공사기간: 착공 2012년 10월 31.일 / 준공 2015년 10월 31.일, (37) 개월

5. 계약금액: 12,819,4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계약금액의 20%(2,563,880,000원)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8.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1,281,940,000원)

- 기간: 계약기간과 동일

[일반약관]

제3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5조(선금금)

④ 선금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금금 정산액 = 선금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⑤ 을이 선금금액을 계약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파산, 노사 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을은 지급받은 선금금 금액 중 잔여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을의 귀책사유로 계약 기간 내에 용역을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인정될 때

② 제①항 또는 기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함에 따라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2) 원고는 2015. 10. 29. C와 사이에,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을 당초의 "2012. 10. 31.부터 2015. 10. 31.까지"에서 "2012. 10. 31.부터 2017. 1. 31.까지"로 연장하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C와 피고 사이의 원고에 대한 계약보증계약 및 선금금지급보증계약의 체결

1) 계약보증계약의 체결 가) C는 2012. 11. 1. 이 사건 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1,281,940,000원, 보증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5. 10. 3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계약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엔지니어링 계약보증 보통약관]

제2조(계약보증)

① 이 보증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가 보증서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증사고'라 합니다) 보증채권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③ 보증채권자는 조합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이 보증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금 청구는 지급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나) 이후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 31.로 연장됨에 따라 C는 2015. 10. 30.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이 사건 주계약과 동일한 2017. 1. 31.까지로 연장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2) 선급금지급보증계약의 체결 가) C는 2012. 12. 17. 이 사건 주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563,880,000원, 보증기간을 2012. 10. 31.부터 2015. 10. 31.까지, 보증채권자를 원고로 하는 선급금지급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른 선급금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보통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엔지니어링 선급금지급보증 보통약관]

제2조(선급금지급보증)

① 이 보증은 채무자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채무(선급금반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입니다.

② 조합이 지급할 보증금을 보증서에 기재된 선급금보증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약서에 정한

이행기일에 있어서의 미회수채권액 중 미지급기성금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나) 이후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1. 31.로 연장됨에 따라 C는 2015. 11. 2.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을 이 사건 주계약과 동일한 2017. 1. 31.까지로 연장하는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다. C의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의 불이행과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주계약 해지 통보

1) 원고는 G(터키 현지법인, 이하 'G사'라 한다)에게도 단순연료(물, 기름) 계통부분의 보조설계용역업무를 하도급하였는데, C 자체의 설계분에 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C가 검토하여 후속 업무를 진행한 G사 등의 설계분에 대하여도 설계 오류에 따른 설계 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5.경부터 2017. 1.경까지 C에게 이에 관한 클레임 취지가 담긴 공문을 보냈다.

2) C가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인 2017. 1. 31.까지도 이 사건 설계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2. 3. C에 대하여 2017. 2. 10.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할 것을 최종 통보하였다.

3) 그러나 이후에도 C는 이 사건 설계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원고는 2017. 3. 3.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설계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증금청구

원고는 2017. 6. 26.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보증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보증사고가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7. 1.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계약과 관련하여 C와 피고는 각 보증기간을 2017. 1. 31.까지로 하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및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계약기간 및 보증기간인 2017. 1. 31.까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또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아 각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및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281,940,000원 및 선급금보증금 142,683,603원(= 선급금에서 매월 기성금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 196,284,900원 - 원고가 C에게 미지급한 설계용역대금 53,601,297원)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 1) C는 이 사건 주계약상의 설계용역의무를 계약기간 안에 모두 완료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설령 C가 이 사건 주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더라도 C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피고는 계약보증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따라서 C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원고의 2017. 3. 3.자 이 사건 주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고, 해지 통보가 보증기간 이후에 있었으므로 보증사고도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어서 원고의 계약보증금 청구는 이유 없다.
- 2)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보통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선급금반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하여 보증하는데, C에 대한 파산선고는 보증기간 도과 후에 있었고,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시점도 보증기간 이후인바, C에 대한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던 2017. 1. 24. 이 사건 선급금보증 약관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선급금보증금청구도 이유 없다.

3. 판단

가. 계약보증금청구에 관한 판단

- 1) C의 이 사건 주계약 불이행 및 귀책사유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C는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설계용역의무를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및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인 2017. 1. 31.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는 C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는 발주처인 E로부터 발전소 및 변전소 사업을 일괄도급 형식으로 수주하여 C와 G사에게 하도급하였다. 그런데 G사는 단순연료(물, 기름) 계통부분 보조설계를 수행한 반면, C는 ㉠ 발전소

설계와 관련하여 증기원동소 재생, 재열 Cycle에 따른 성능 관련 핵심 설계 수행, ㉔ 발전소 설계 중 G사의 설계분 검토 및 회신, ㉕ 변전소 전체 설계 수행, ㉖ 발전소 및 변전소에 관련된 기자재에 관한 G사 및 벤더(vendor, 기자재 제작사, 이하 '기자재 제작사'라 한다)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회신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발전소 설계용역의 구조를 보면 C가 담당하는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② 위와 같이 C의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가 이 사건 발전소 설계용역의 핵심적인 부분임에도, C 자체의 설계분에 오류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C가 검토하여 후속 업무를 진행한 G사 등의 설계분에 대하여도 설계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③ 피고는, 원고의 기자재 공급이 늦어짐에 따라 기자재 제작사가 제출하는 기자재 설계도면 및 설계 데이터 또한 늦게 제시되었고, 이로 인해 C의 설계용역 진행도 그 착수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전소 설계 착수의 구조상 설계사인 C가 원고에게 먼저 구매사양서를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자재 공급업체를 선정한 다음 최종 확정을 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C는 총 19개 중 18개 아이템의 구매사양서 제출을 지연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기자재 공급이 지연된 면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피고는, 원고의 설계변경 용역의 성과물 승인 지연으로 인하여 C의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발주처 또는 원고의 승인 지연으로 인한 C의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이 지연될 위험에 대비하여 마련된 Communication Plan에 따라 "원고가 14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 승인을 간주하고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간주 조항이 존재하는 점, ㉗ 원고는 2013. 12. 11. C에게 승인 간주 대상 설계도서에 관하여 승인으로 보고 후속 설계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는 추가 지침도 전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승인 업무 지연으로 인하여 C의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이 지연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⑤ 피고는, C가 2016. 11.경 As-built 도면(건축물을 준공했을 때의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낸 도면)을 원고에게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가 2016. 11.경 원고에게 제출한 As-built 도면(을 제18호증)은 건축물을 준공했을 때의

현상을 충실하게 나타낸 도면으로 볼 수 없고 실질적인 내용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원고가 이를 거절하였고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7. 1. 31. 이후에 원고가 직접 As-built를 다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한 점, 또한 원고가 위 2017. 1. 31. 이후 자체적으로 추가 작성한 도서는 800여 건, 수정한 도서는 100여 건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As-built 도면 제출로 인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⑥ 피고는, 이라크 H 지역의 치안 불안으로 인해 현장시공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설계내용에 영향을 미쳐 C의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의 이행에 지연을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의 설계 사무실 및 관련 인력은 모두 이라크 현지가 아닌 한국에 있었던 바, 비록 현장시공 과정에서 확인되어야 할 설계내용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현장의 치안 불안이 이 사건 설계용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계약 해지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C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설계용역의무를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및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인 2017. 1. 31.까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3. 3. C에 대하여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 내에 설계용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주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한 사실도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주계약은 원고의 2017. 3. 3.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3) 보증기간 내에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계약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99331 판결 참조).

나) C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주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바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어야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1항은 "주계약의 의무를 보증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증사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3항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보증사고의 개념으로 보증기간 중

주계약의 해지까지 완료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주계약의 해지는 보증청구를 위한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다), ②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3조 제1항도 "C가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은 원고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여 계약보증금의 귀속사유로 채무불이행만을 언급하고 있고, 반드시 이 사건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를 전제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경우와 같이 이 사건 주계약의 계약기간과 보증기간의 종기가 일치하고, 수급인인 C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설계용역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비로소 채무불이행에 의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만일 주계약의 실제 해지에 의하여 비로소 보증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면, 보증기간 경과 전에 해지할 수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기간 종료일까지 이 사건 주계약을 해지할 수 없어 보증사고의 발생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천적으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위험에서 벗어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의 이 사건 주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발생함으로써 보증기간 만료일인 2017. 1. 31.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소결 앞서 살핀 바를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보증금 1,281,94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선급금보증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C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종기인 2017. 1. 31. 이전인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5조 제5항은 "파산, 노사 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선급금반환의무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회생절차 폐지결정은 파산에 준하는 정도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급금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 보통약관 제2조 제1항은 "이 보증은 채무자의 주계약과 관련하여 선급금채무(선급금반환 이행기일이 보증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채권자에게 부담되는 채무에 대신하여 보증금을 지급하여 드리는 보증"이라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은 2017. 1. 31.까지인 사실, ②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5조 제5항은 "C가 파산, 노사 분규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C는 지급받은 선급금 중 잔여 금액을 즉시 현금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③ C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인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9,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과 별도로 이 사건 주계약과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선급금반환의 사유와 이행기 등의 보증사고를 정하고 있고, 선급금 반환의 사유와 이행기를 정한 이 사건 주계약 일반약관 제5조 5항에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으로 인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는 점, ② 그런데 C는 2017. 1. 24.자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항고하였고, 2017. 8. 16. 위 항고가 기각되어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의 보증기간 이후인 2017. 8. 21. 비로소 위 결정이 확정(서울고등법원 2017라20204)되었으며, C에 대한 파산선고는 그보다 한참 후인 2017. 11. 30. 이루어진 점(서울회생법원 2017하합100260), ③ C는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은 2017. 1. 24. 이후에도 이 사건 주계약의 잔여 업무 수행을 위해 원고와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C에 대하여 2017. 1. 24.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파산에 준하여 불가항력적 사유로 보증기간 안에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금 1,281,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증금청구 다음날인 2017. 6.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7.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반정모

판사박상수

판사서지혜